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·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노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9887호, 2024. 1. 2. 공포, 2024. 4. 3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3. 8. ~ 2024. 3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3항 중 “19세 미만의”를 “24세 미만 또는 제17조의2에서 정한 장애를 가진 자녀·손자녀”로 한다.

제15조제6항제4호 중 “19세 미만의”를 “24세 미만 또는 제17조의2에서 정한 장애를 가진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,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노인복지주택 입소자)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의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”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.

보건복지부령 제31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호 중 “19세 미만의”를 “24세 미만 또는 제17조의2에서 정한 장애를 가진 자녀·손자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4조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 등) ①, ② (생략)	제14조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 등) ①, ② (현행과 같음)			
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<u>19세 미만</u> 의 자녀·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24세 미</u> <u>만 또는 제17조의2에서 정한 장</u> <u>애를 가진</u> ----- -----.			
제15조(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) ① ~ ⑤ (생략)	제15조(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			
⑥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.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,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.	⑥ (현행과 같음)			
1.~ 3. (생략)	1.~ 3. (현행과 같음)			
4. <u>19세 미만의 자녀·손자녀와</u> 함께 입소하는 자	4. <u>24세 미만 또는 제17조의2에</u> <u>서 정한 장애를 가진 자녀·</u> <u>손자녀와</u> -----			

<u><신 설></u>	제17조의2(노인복지주택 입소자)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의 “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” 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.
<u>제17조의2(노인복지주택 입소자 의 퇴소) ①·② (생 략)</u> 부 칙<보건복지부령 제18호, 2015.6.2> 제2조(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 한 특례) 1.~ 3. (생 략) 4. <u>19세 미만의</u>----- -----	<u>제17조의3(노인복지주택 입소자 의 퇴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u> 부 칙<보건복지부령 제18호, 2015.6.2> 제2조(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 한 특례) 1.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24세 미만 또는 제17조의2에서 정한 장애를 가진</u>----- -----